

물품 제작·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품명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금108,159,000원(추정가격: 금98,326,364원+부가가치세: 금9,832,636원)		
납품장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내		
납품기한	2026년 9월 4일까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현장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 비치되어있는 과업지시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내역서 및 관련 문의: 시설과 김기형(☎041-730-7194)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7. 21.(화) 10:00	2026. 7. 23.(목) 10:00	2026. 7. 23.(목)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 다. 청렴계약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라.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둔 업 체이어야 합니다.

- 4)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 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6) 낙찰예정자는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약약서, 1등급 고효율기 자재인증서를 이메일(nonsan@cne.go.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실내기 설치완료일까지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의거 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가.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완수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292,912	978,530	128,578	1,548,759	626,041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제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김경민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6, FAX : 041-730-7178 이메일 : nonsan@cne.go.kr
-----	--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기형 ☎ 041-730-7194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7. 1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